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04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이소영·염태영·복기왕

안태준 • 문진석 • 윤종군

송기헌 • 맹성규 • 전용기

민홍철 · 김기표 · 이춘석

손명수 · 한준호 · 이연희

정준호 • 박용갑 의원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 또한, 우리나라 출생률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지난 60년간 약 86.4% 감소하며, 출생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큰 하락을 보이고 있음.

OECD는 우리나라의 출생률 감소로 인해 6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노년 부양비가 급증해 노동력 확보와 공공 재정에 매우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측한바, 중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출생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저출생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부담, 그중에서도 주택가격이 주된 요

인으로 꼽히고 있음. 실제로 국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 매입을 위해 자금이 몰리던 시기에는 출산율 하락의 패턴이 나타났으며, 주택매매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다음 해 출산율이약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 시점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국가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민영주택의 3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신혼부부의 범위를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4조의3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4조의3(신혼부부 우선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100분의 30 의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입주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신혼부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 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부터 10년 이내이거나 입 주자 모집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일 것
 - 나. 무주택자일 것
 - 2. 입주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다.
 - 가.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9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3명 이상인 경우

- 나. 자녀가 2명인 경우
- 다. 자녀가 1명인 경우

하다.

- 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혼부부 우선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제54조의3(신혼부부 우선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입주자의 자격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신혼부부(「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 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부 터 10년 이내이거나 입주 자 모집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일 것

나. 무주택자일 것

2. 입주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다.

가.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9세 이하인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3명 이상인 경우

나. 자녀가 2명인 경우다. 자녀가 1명인 경우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